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2. 12. 9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2. 11. 15.
- 회부일 : 2022. 11. 18. (의안번호 : 22 - 130)

### 2. 제안이유

-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’23.1.1.)에 대비하여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6조)
- 지정금융기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0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20조)
-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 ~ 제22조)
- 시행일 및 기부금 모집·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(부칙 안 제1조~제2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답례품의 제공)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(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)

## 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’23.1.1.)에 대비하여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 (안 제1조)에 목적을 정의함.
- (안 제2조 ~ 제6조)에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
- (안 제7조)에 지정금융기관에 관한 사항
- (안 제8조 ~ 제10조)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(안 제11조 ~ 제20조)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
- (안 제21조 ~ 제22조)에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- (부칙 안 제1조~제2조)에 시행일 및 기부금 모집·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

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제3조(답례품의 종류)제1항 답례품 제공과 제3항에 답례품을 우선 선정 내용중 마포구 현실에 맞는 답례품 조항 수정이 필요할

것으로 판단되며,

- 기부자의 감사표시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·제조된 물품,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,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,
-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 위원회 선정시부터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고향사랑 기부자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답례품 선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사료됨.